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홍인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66 발의년월일 : 2020. 09.

발 의 의 원 : 홍인표 의원

강성환 의원 김규학 의원 김동식 의원 김원규 의원 비지숙 의원 이영애 의원 임태상 의원 황순자

1. 제안이유

○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전통시장 내 시설을 추가하고 재해 시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하며 각 조항을 「도로법」과 「도로법시 행령」에 따라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전통시장 내 차양, 비 가리개의 시설 추가에 대해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 근거조항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재해 시 점용료 납부기한 연기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"(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대상)"을 "(도로점용허가 대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광고판 기타"를 "광고판, 그 밖에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4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·비 가리개,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

제3조의 제목 "(점용료의 산정)"을 "(점용료의 산정기준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「도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제4조의 제목 "(점용료의 부과 및 반환)"을 "(점용료의 부과·징수 및 반환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·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71조에 따른다.
- ②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,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7조를 삭제하고,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붙임 1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혅

정 힞} 개

- 제2조(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제2조(도로점용허가 대상) ① 부과대상) ①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 는 인공시설물·물건,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도로법 시행령 |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
 - 2. 광고탑,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
 - 3. 버스표판매대 · 구두수선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〈신 설〉

② 도로점용료(이하 "점용료 "라 한다)는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시설 물,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, 개 축,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 다.

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5조제12 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 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〈삭 제〉

2. ---- 광고판, 그 밖에 ----

〈삭 제〉

4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· 비 가리개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
〈삭 제〉

제3조(점용료의 산정) ① 점용료 는 「도로법 시행령」별표 3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다.

제4조(점용료의 부과 및 반환) 점 용료의 부과 및 반환 절차 · 방 법 등은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 71조에 따른다.

〈신 설〉

제6조(점용료의 감면) ① 「도로 제6조(점용료의 감면) 〈삭 제〉 법」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도로법 시행 령」제73조에 따른다.

② (생 략)

제7조(점용료의 징수) ① 점용료 의 징수는 「도로법 시행령」제 71조에 따른다.

- 1. 삭 제
- 2. 삭 제

제8조 ~ 제10조 (생 략)

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① 「도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6조제4항 및 영 제6 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 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른다.

제4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 및 반환)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· 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 71조에 따른다.

②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,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 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점용료의 납부기한을 연기 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〈삭 제〉

제7조 ~ 제9조 (현행 제8조부 터 제10조까지와 같음)

관계법령

[도로법]

제66조(점용료의 징수 등) ① ~ ③ (생 략)

④ 점용료의 산정기준,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(제23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(생략)

【도로법 시행령】

제55조(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)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(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)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11. (생략)

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·물건(식물을 포함한다)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

제69조(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)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(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 71조제7항에서 같다)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(이하

- "점용료"라 한다)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 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(생략)

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】

- 제18조(국·공유지 사용료등 감면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(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)을 「국유재산법」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조에 따른 공유 재산,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, 「하천법」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(이하 "국·공유지"라 한다)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, 대부료 또는 점용료(이하 이 조에서 "사용료등"이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(減免)할 수 있다.
 - 1.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: 「국유재산법」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
 - 2. 도로·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: 「도로법」, 「하천법」 및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
 - ② 제1항에 따라 국·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1. 주차장, 진입로, 통행로,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
 - 2. <u>비 가리개,</u> 공동창고, 물류센터,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 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
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